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법률 제8630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일정한 품질기준”을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2조제9호중 “사항”을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에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 제목“(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으로,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급된 금전”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로 한다.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중 “교부”를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동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

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

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①가맹본부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조정원”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을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에”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17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중전의 제3항)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협회의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협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회의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을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제23조제3항제2호 중 “60일”을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가맹거래사”로, “상담사의”를 “가맹거래사의”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담사”를 “가맹

거래사”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3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제29조의 제목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를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를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와 자격정지)”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상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상담”을 “업무수행”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며, 동항제5호중 “상담”을 “업무수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를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으로,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을 “가맹급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중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를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

제2항, 제9조제1항”으로,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제41조제1항중 “중요한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⑨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9항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⑪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제1항,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41조제2항제2호,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5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종전의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6호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에 신청되거

나 조정 중인 사건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가맹사업거래상당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당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가맹사업거래상당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당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

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희망자의 범위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법 제2조제4호)
 - (1)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가맹희망자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정보공개서의 제공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 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규정함.
 - (3) 가맹희망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

가 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받게 되고, 일정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충실히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7조)

-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정보공개사항을 스스로 기재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2)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금 예치제도의 도입(법 제6조의5 신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

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이 예치된 기관의 장에게 그 예치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3)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원받고, 사기거래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가맹금 반환요구요건의 확대(법 제7조제2항 신설 및 법 제10조제1항)

- (1) 종전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정보공개서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음.

- (2) 앞으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전(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가맹본부의 성실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유도하고, 정보공개서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한 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법 제12조제1항제4호)

- (1)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법 제13조)

-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이관(법 제16조)

- (1) 종전에는 가맹본부사업자단체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함.

(3) 분쟁조정기구를 가맹사업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설치함으로써 분쟁조정업무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가맹사업거래상당사제도를 가맹거래사제도로 변경(법 제27조 및 제28조)

(1)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당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맹사업거래상당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그 업무범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과 정보공

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함.

(3)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 단서를 삭제한다.